

영등포구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 의원 발의】



2019.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183호로 2019년 11월 13일 고기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대학생으로 확대 적용하여
통장조직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전문 개정과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자녀까지로 확대 적용(안 제1조)
- 나. ‘장학금 대상자 선발’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5조)
- 다. ‘대학생 장학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라. 장학생의 의무를 삭제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9. 11. 12. ~ 11. 18.) : 의견 있음(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의견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7조(장학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하면, 통·리장 자녀장학금 적용대상자는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의 경우 ‘이장 대학생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 여부’ 질의에 대해 통·리장 자녀 중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회신한 사례가 있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인해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자녀까지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장학금 대상자 선발’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음
- 검토결과,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의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2019년 하반기 고3, 2020년 고2, 2021년 고1 예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현대사회의 저출산 추세를 반영하여 변화된 환경에 부합되도록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있어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재정비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